〈이사회 운영 규약〉

거거덩협동조합 총회 승인 (2024 년 3 월 26 일)

제 1 조(목적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구성과 그 유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규약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상임이사"라 함은 등기된 이사로 조합에 상시로 출근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.
 - 2. "비상임이사"라 함은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 상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 시 참석하는 임원을 말한다.

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 2 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제 6 조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- ③ 정기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마지막 화요일 전후 2 주 내에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7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재상정 할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사항)

-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.
 - 1. 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
 - 나.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의안
 - 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가,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
 - 다.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,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라. 협동조합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4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- 가. 조직의 변경
 - 나. 정원의 변경
 - 다. 국외사무소의 신설 및 폐지
 - 5. 종합예산의 결정·변경
 - 가.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
 - 나.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
 - 다. 예비비의 사용
 - 6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
 - 7.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 - 8.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
 - 9. 직원의 인사(징계, 포상, 승진, 정원 등)에 관한 사항
 - 10.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
 - 11. 관계법령, 정관 또는 조합 내규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 - 12.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

제 9 조(보고사항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운영감사, 회계감사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
 - 2.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
 - 3.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 - 4.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
- ② 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비상임이사)

-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 인 이상의 연서로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의견청취)

-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조합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이 있지 아니하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참석자 발언 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작성된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동조합 주사무소에 비치한다.
- ③ 의사록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의사록 작성은 조합원 중 1 인이 한다. 작성자는 이사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

